

□ **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**

결격사유
· 피성년후견인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· 전직 근무기관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·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·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□ 한국해양진흥공사 채용세척[별표2]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

공통자격
· 성별·연령별 제한 없음(단,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(만60세) 미만인자) ·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·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· 한국해양진흥공사 「인사규정」 제7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·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,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 가능한 자 ·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

□ 자격기준

모집분야	자격기준
일반직	·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· 경력 무관. 단,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보유자 - TOEIC 700점 이상, NEW TEPS 340점 이상, TOEFL iBT 79점 이상, TOEIC-S IM2 이상, IELTS 5.5 이상, 오픽(영어) IM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어학능력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여 조회, 확인 가능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함
 - 어학성적은 지원자격 확인 및 전형평가 요소로만 활용하며, 국외 응시, 조회불가 성적,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함
 - 단,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
-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 적용 비율과 보훈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, 누락 시 자격미달로 판단